



**제6조 (정보제공의 동의)**

본 약정의 원활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본인에 관한 기본정보 및 개별대출 실행내역등의 거래내역을 “거래처”에 제공함에 동의 하기로 합니다.

**제7조 (면책)**

- ① 제출서류의 허위, 위 변조,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본인의 부담으로 하며, 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 하기로 합니다.
- ② 본 약정서의 거래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 제20조(손실부담 및 면책)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

**제8조 (상환 의무)**

거래처와 귀행 간에 사전에 협의한 인터넷뱅킹등 기타 전산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명세 통보시 해킹 등 외부 요인에 의하여 채권명세, 내용이 변경된 경우와 본인이 인터넷 또는 창구에서 대출 신청시 전산오류와 해킹 등의 방법으로 인하여 외상매출채권금액보다 대출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.

**제9조(기한연장 및 약정의 자동 해지)**

- ① 원 약정서의 여신기간 만료일은 은행 또는 본인 중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. 이 경우 자동연장이란 함은 별도의 한도거래 기간연장용 추가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은행이 정한 최장기간(30년)내에서 구매기업의 신청에 의해 구매기업과 은행이 정한 기한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. 다만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연장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- 1. 본인의 대출이 대출기일 현재 연체중인 경우
  - 2. 본인에 대하여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록된 경우
  - 3. 구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발행받은 마지막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는 경우
- ② 구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발행받은 마지막 날로부터 2년이상 외상매출채권을 발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 자로 본 이용약정 및 여신약정은 별다른 통보없이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.

**제10조 (본 추가약정의 효력)**

본 추가약정, 원 약정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,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 및 전자금융거래기본 약관(구 하나은행)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본 추가약정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원 약정,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 제도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의 순서로 적용합니다.

본인은 본 약정서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,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 이를 약정함	본 인	(인)
--	-----	-----

20        년        월        일

**본인(채무자)**

본 인 : \_\_\_\_\_ (인)

주 소 : \_\_\_\_\_

**거래처(구매기업)**

업 체 코 드: \_\_\_\_\_

중 심 기 업 명: \_\_\_\_\_

중심기업사업자번호: \_\_\_\_\_

